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 1. 10 선고 2021가단54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노동조합연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박
담당변호사 성창석, 김지성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름길
담당변호사 김민수
변 론 종 결 2022. 11. 15.
판 결 선 고 2023. 1. 10.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20. 10.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20. 10. 23. 접수 제148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광산 노동자의 권익 보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탄광인 E광업소에 있는 폐석과 저열량탄[kg당 3,000kcal 미만으로 이물질을 분리(이러한 분리작업을 ‘재선탄 작업’이라 한다)해야 판매가 가능한 고열량탄이 된다]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C은 연탄 판매사업을 하는 ‘F’의 대표자로서 위 폐석과 저열량탄으로 생산된 재선탄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하여 C의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2020. 10. 13. C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C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증여하고, 2020.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① 원고는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가합6047호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C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5. 20. ‘C은 원고에게 3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② C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춘천)2021나1211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22. 3. 18. 제1심판결 중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대법원 2022다227961)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7. 1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C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는 원고의 C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고 있는바,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조인

별지